

## '2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

### I 사업 개요

#### □ 목 적

-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

#### □ 사업내용

-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(전년 11.1.~금년 10.31.)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

#### □ 지원 자격 및 요건
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·임업인·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
  - \*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
  - \*\* 단, 신규 인증을 받은 자(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인증 이력이 없는 자)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일에 인증서가 유효해야 함

#### □ 지원내용 및 예산

- 지원 내용·품목: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
- 지원 기준 : 국고 100%, 지자체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
  - 지급한도: 0.1~30ha/농가
  - 지급기한: 무농약 3년, 유기 5년(무농약 3년 포함)
  - 지급단가

구분		유기 (유기전환기)	무농약	유기지속 (유기전환기)
논	벼·연근·미나리	950천원/ha	750천원/ha	570천원/ha
	채소·특작·기타	1,300천원/ha	1,100천원/ha	780천원/ha
밭	과수	1,400천원/ha	1,200천원/ha	840천원/ha

\* 무농약 인증 농가 중 '유기전환기'에 있는 경우 '유기 또는 유기지속' 단가 적용

- '26년 예산 : 40,687백만원(국비 100%)

#### □ 사업 신청

- 장소 :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 및 온라인(농업e지)으로 신청
- 신청 기간 : 3~4월(비대면), 5~6월(대면)
  - \* '26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은 8~9월에 추가 접수

#### □ 대상자 선정

- (선정)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·요건을 갖춘 자(6월)
- (확정)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(전년 11.1.~금년 10.31.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(11월)
  - \* ①시·군·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, ②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, 인증 변동사항 확인,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

#### < ※'26년 신규 인증 필지 관련 예외 규정※ >

- ▶ (벼) 사업 신청기간(3~6월 및 추가 접수 8~9월)에 신청하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(10월)된 후 이행점검 마감일(10.31)까지 벼 품목에 대해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
- ▶ (벼 이외 품목) 사업 신청기간(3~6월)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여 이행점검 기간(5~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
- ※ '25년 신규 필지 판단 기준: '25년 10월말 기준, 「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」에 미 등록된 필지로 해당 필지의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(시군구/읍면동 담당자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)

#### □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친환경농업과	사무관 김윤수 주무관 김일호	044-201-2435 044-201-2434

## II 주요 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친환경농어업법”이라 한다)」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

### 3.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농산물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“친환경농산물” 일체
- 지원대상 농지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'26년도 사업기간('25.11.1.~'26.10.31.)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
  -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

#### < 지급대상 제외 농지 >

##### 「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」 제5조 별표2

-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(培地)나 재배용기·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(다만, 토양을 관리하면서 중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)
-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(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)을 굴취·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
-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,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
-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

※ 이행점검 기간 등 예외 규정: 친환경농업직접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유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'26년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 중 사업 신청기간에 사업을 신청한 필지에 한하여 ① 친환경 벼 품목은 이행점검 마감일(10.31.)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, ② 그 외 인증 품목은 6월 30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이행점검 마감일(10.31.)까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 가능(다만, 해당 필지의 직불금 과거 수령 이력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나 단가는 변경 가능)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자금재원: 농업·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금
- 지원형태: 지자체 보조(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), 국고 100%
- 지급단가(단위: 천원/ha)

인증단계	밭		
	벼·연근·미나리	과수	채소·특작·기타
유기(유기전환기)	950	1,400	1,300
무농약	750	1,200	1,100
유기지속(유기전환기)	570	840	78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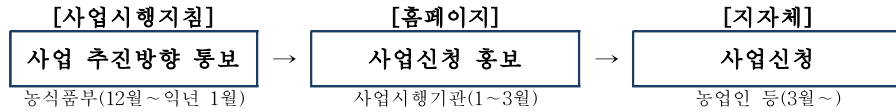
\* 무농약 인증 농가 중 '유기전환기'에 있는 경우 '유기(유기지속)' 단가 적용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: 0.1~30ha
  -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30ha를 초과할 수 있음. 이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30ha를 초과할 수 없음
  - \* 예시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(32ha), B(35ha), C(5ha)의 경우 단체 대표가 65ha를 신청, A, B, C는 각각 30ha, 30ha, 5ha에 대한 직접지불금 수령
- 지급 기간 및 방법: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~5년간만 지급(불연속인 경우 3~5회만 지급)
  - \*\* '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,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
  -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(유기·무농약)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(3회) 지급,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(2회) 지급
  - \* 최초 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 한정) 3년(3회) + 유기는 추가 2년(2회) 지급
  - 신청기간 이후(당해년도 사업기간 중)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(무농약 →유기 또는 유기→무농약)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
  - \* 이행점검 종료일(10.31.)을 기준으로 함
  -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(5회)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
  -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, 유기(유기지속) 단가 적용 가능

### Ⅲ 사업 신청 및 선정

#### 1. 사업 홍보 및 신청

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,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 및 농관원, 인증기관 등에 시달(12월~익년 1월)
- 시장, 군수,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(1월~3월)
  -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, 게시판 공고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, 반상회보 게재 등
- \*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, 인증기관, 인증종류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, 사업신청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신청기관(읍·면·동)에 제출하도록 안내
- \*\* 사업기간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공지

#### 가. 사업신청

- (개인)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(필요시)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 및 **온라인(농업e지)**로 신청서 제출
  - \* 신청서류: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  -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- (생산자단체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
  - \* 신청서류: ①, ②와 신청인 정보, 입금계좌, 인증종류, 품목, 농지 소재지, 재배면적이 포함된 신청 세부현황

#### 나. 사업신청 기간: 비대면 3.1.~4.30., 대면 5.1.~6.30.(전산입력 기간: 3.1. ~ 7.10.)

\* '26년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은 8~9월에 추가 접수

#### 다. 사업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, **온라인(농업e지)**

- 신청 농지가 동일 시·군·구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  - \* 신청 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- \*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(직불금 지급 시 신청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사업 기간 내 인증 갱신 필요)

#### 2. 사업 선정 및 이행 단계

##### 가. 사업대상자 선정

- 시장·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,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(7.10.까지)
  - 신청 자격, 논·밭 구분, 인증단계별 지급단가, 농가당 지급면적 한도, 지급횟수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 단가 조정
- \* 읍·면·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, 인증필지·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

##### 나. 사업 선정내용 변경

- 변경대상
  - (사업대상자)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·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
    - \* 인증기관에 인증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 승계가 승인된 경우에 한하며, 직접지불금은 사업기간 내에 승계를 받은 농업인에게 지급
    - \*\*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농업인은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만료일(10.31.)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
  - (인증기관)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  - (인증종류)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
  - (농지현황) 신청 농지의 주소(지번) 변경,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
    - \* 인증대상자,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,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
- 변경신청 기간: 변경 및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

- 변경신청 방법: 해당 시·군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제출
  - 변경신청을 받은 시·군·구청장은 농업e지 운영기관(1899-0072)에 변경가능 허용 요청 후, 자료 입력(농업e지 운영기관은 시·군·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)

#### 다. 사업량 배정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(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, 7.20. 까지)

#### 라.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

-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7.31.까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[별지 제2호 서식]
  - \* 단,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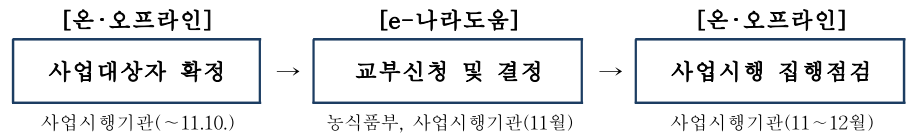
#### 마. 이행점검 단계

- 시·군·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대상자가 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」 제11조와 제54조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
- 기관별 점검 사항
  - (인증기관)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
    - \* 인증정보(인증번호, 인증사업자,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
  - (시·군·구)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 한도(면적·횡수) 초과 여부, 중복신청 등
    - \*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,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
-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→ 인증기관)
  - 시·군·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 전산검증 요청(5.21.~) / 신청정보 변경 시 수시 요청
    - \* 전산(농업e지) 운영기관(1899-0072)에서 수정 권한 부여 후 이행점검 기간 중 입력 가능
- 이행점검 기간: 5.21.~10.31.

- (시·군·구) 인증기관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
- (인증기관)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(실경작자 의심 등 중요 불일치 사항은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)
- 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)
  -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·군·구에 통보 (정기/수시, 10.31. 까지)
  -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증번호, 인증종류, 인증면적과 신청면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산(농업e지)으로 입력(통보)

## IV 사업 시행 및 관리

### 1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농식품부는 시·도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교부 결정 후 해당 시·도에 예산 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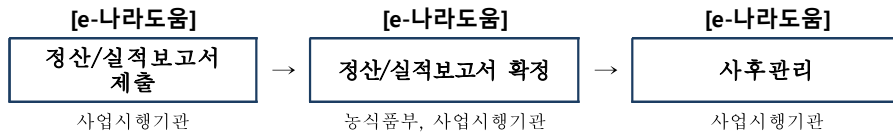
### 가.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

- 시·군·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(농업e지)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
  - 인증 취소, 인증기간 종료, 신청 포기,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(필지) 제외
- 사업비(직불금)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(11.10. 까지)
  - 지급소요액 요청은 전산시스템(농업e지)을 마감한 금액\*을 반영
    - \* 전산시스템(농업e지) 통계/보고서 별지7호 서식(종류별 10원미만 절사) 활용

## 나.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
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소요예산액 교부(11월)
- 각 시·도(시·군·구)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(11~12월)

## 2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시도 및 시·군·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/실적보고서를 등록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자가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음
  -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(전년 11.1.~10.31.) 인증취소, 인증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 조치
  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(10.31.) 후에도 당해연도 말(12.31.)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·군·구에 통보
-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
- 각 시·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직불금은 국고(공익기능증진 직불기금) 세입금으로 반납

\* 환수절차: 반납고지서 발급(시·군·구) → 농업인 등 반납 → 시·군·구 계좌 → 시·도 계좌 →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(농협 301-0286-2705-71)로 반납

## V 주요 변경사항

□ 지급 예산 수정 : '25년 31,913 → '26년 40,687백만원(국비 100%)

□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개선(저농약 지급횟수 제외 산정)

기존	개정(안)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○ (생 략) -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, 인증단계(유기·무농약)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(3회) 지급,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(2회) 지급 * 최초 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) 3년(3회) + 유기는 추가 2년(2회)지급	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○ (현행과 같음) * 최초 인증필지(유기·무농약 한정) 3년(3회) + 유기는 추가 2년(2회)지급

□ 사업 신청 방법 및 기간 개선(온라인 접수 신설 및 접수 기간 연장)

기존	개정(안)
□ 사업 신청 ○ 장소 :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서 신청 ○ 신청 기간 : 3~4월	□ 사업 신청 ○ 장소 :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사무소 및 온라인(농업e지)으로 신청 ○ 신청 기간 : 3~4월(비대면), 5~6월(대면)
1. 사업 홍보 및 신청 가. (생 략) 나. 사업신청 기간: 3.1. ~ 4.30.(전산입력 기간: 3.1. ~ 5.10.) 다. 사업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	1. 사업 홍보 및 신청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사업신청 기간: 비대면 3.1. ~ 4.30., 대면 5.1. ~ 6.30.(전산입력 기간: 3.1. ~ 7.10.) 다. 사업신청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, 온라인(농업e지)

□ 지원 자격 및 요건 개선(신규 농업인 직불금 수령 요건 현실화)

기존	개정(안)
□ 지원 자격 및 요건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·임업인·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* 단,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	□ 지원 자격 및 요건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·임업인·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*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. ** 단, 신규 인증을 받은 자(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인증 이력이 없는 자)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일에 인증서가 유효해야 함.

[별표]

## 사업 추진 체계

< 세부계획 >      < 시기 >      < 주요내용 >

① 지참시달 및 홍보	(전년 12월~2월)	·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참 시달 · 사업지참 설명, 공고·홍보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
② 사업 신청	(3.1.~6.30.)	·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(농지소재지 읍·면·동, 온라인)
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	(6.30.~7.10.)	· 사업대상자 선정(시·군·구, 6.30.) · 선정결과 보고(시·도 → 농식품부, 7.10.)
④ 사업량 배정통보	(7.20.~7.31.)	· 시·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(농식품부, 7.20.) ·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(시·군·구 → 신청인, 7.31. 까지)
⑤ 이행점검	(5.21.~10.31.)	·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(시·군·구 담당자, 5.21. 까지) ·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·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(읍면동 담당자) ·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(인증기관 → 시·군·구, 10.31. 까지)
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	(11.1.~11.10.)	·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(시·도 → 농식품부, 11.10. 까지)
⑦ 직불금 지급	(11.15.~12월)	· 소요예산액 교부(농식품부 → 시·도, 11월) · 보조금 지급(시·군·구 → 농업인, 11~12월)

[별지 제1호 서식]

■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##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성명(법인명)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(휴대전화)	
입금계좌	은행명	계좌번호	예금주

구분	인증종류	품 목		농 지 소 재 지				재배면적 (㎡)	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(O,X)	과거 지급 현황 (횟수)
		대분류	소분류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지번			
논										
밭										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확인

읍장·면장·동장

첨부서류	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제출 및 처리기관	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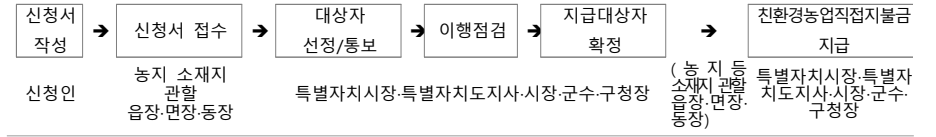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3쪽 중 제2쪽)

### 작성 방법

-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- "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"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- "주소"란에는 주소를 시·도, 시·군·구, 읍(면)·리(동)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.
- "계좌번호"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- "인증종류"란에는 유기,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.
- "품목"란에 대부분류에는 곡류, 채소,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,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.

### 처리 절차



### 행정정보 공농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,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, 농정안내 서비스, 지방농정 지원, 농업·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, 전업농 등 육성·지원,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,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 ] 동의 [ ] 거부

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, 공공기관,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·변경·등록,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,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 ] 동의 [ ] 거부

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, 등록(선정) 심사, 공개, 보조금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·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 ] 동의 [ ] 거부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농림축산식품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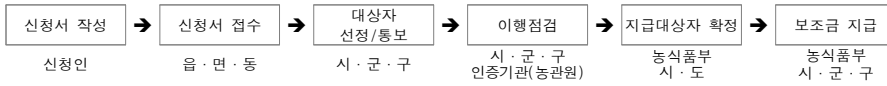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

작성 방법

- ① 신청인: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(법인 포함)의 인적사항을 기재
  - \*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
- ② 신청 변경사항
  - 사업대상자: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,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
  - 인증기관: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
  - 인증종류: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(유기·무농약)가 변경된 경우
  - 농지현황: 신청농지의 주소변경, 필지수,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
- ③ 입금계좌: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

처리 절차

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·지원,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,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, 지방 농업정책 지원, 농업·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  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  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,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, 경관보전직접지불금,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, 보조금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」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·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 ] 동의 [ ] 거부
- ※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(해지)되는 날까지 유효하며, 약정 종료 또는 해제(해지)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용자·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,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